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규정 6-1-10

규정번호 6-1-10
제정일자 2020.7.27
최근개정 2025.1.23
개정차수 4차 개정
관리부서 원격교육지원센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우리 대학 글로벌 미래교육을 위한 원격교육체제를 확립하고 원격교육의 질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교내 각종 원격교육을 지원한다.

제3조(직무) 센터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할 수 있다.

1. 교내 원격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
2.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3. 원격교육 콘텐츠 품질인증 관련 직무
4.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5. 글로벌 원격교육 추진
6. 비대면 교육 정책 수립 및 수업지원
7. 원격교육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구과제 및 컨설팅 업무 수주와 운영
8. 기타 센터의 목적에 관계되는 업무

제4조 (조직과 임무)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의 운영과 시설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센터에는 팀장을 두고 팀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①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비대면교육의 질관리를 위해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개정 2025.1.23.)

②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교원, 학생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학 기간에만 직을 유지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2.07.,2021.09.13.,2025.1.23)

③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0.12.07.,2025.1.23)

1.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 추진
2. 비대면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지원
3. 원격강좌운영규정 제4조의 기능 수행(호 신설 2021.09.13.)

4. 원격강좌의 콘텐츠 질관리(신설 2025.1.23.)
5. 비대면교육 콘텐츠 질관리(신설 2025.1.23.)
6. 외부콘텐츠 사용에 따른 적정성 여부 평가 및 심의(신설 2025.1.23.)
7. 기타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진(개정 2024.7.24.)

④ <삭제(2025.1.23.)>

⑤ <삭제(2025.1.23.)>

1. <삭제(2025.1.23.)>
2. <삭제(2025.1.23.)>
3. <삭제(2025.1.23.)>
4. <삭제(2025.1.23.)>

제6조(운영시행규칙)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 및 우리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2항제4호, 제5조제4항제4호)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제4호~제7호, 제5조제4항·제5항)